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5호

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9호(2017.12.28.) 및 광진구고시 제2018-123호(2018.11.8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(변경) 승인 고시된 구의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서울특별시

1.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
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: 구의시장 정비구역 (변경없음)

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(변경없음)

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구의시장 정비구역	광진구 구의동 66-25 일대	3,215.7	-

다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(변경)

구분	기정	변경	비 고
사업시행자	구의시장 주식회사	구의시장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	공동시행

라.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: 변경승인 고시일

마. 사업추진계획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2)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3)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4)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5) 건축물의 주용도·용적률·건폐율·높이·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6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7)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8) 입점상인보호대책 (변경없음)

2.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

- 사업구조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공동사업시행으로 변경하고자 함

3. 관계서류 열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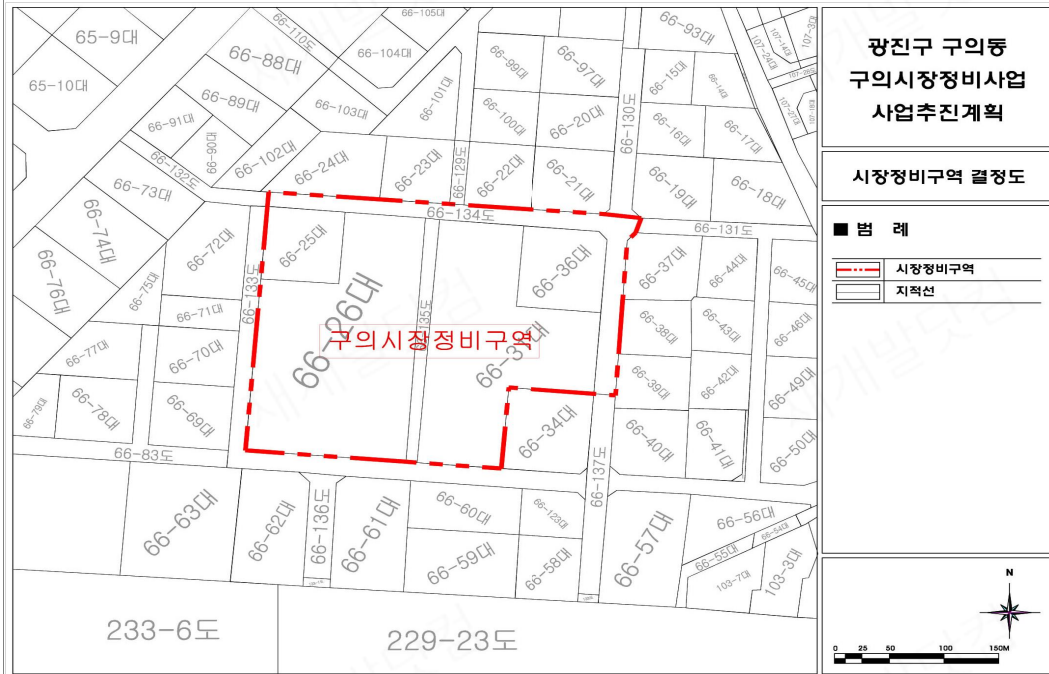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와 광진구 도시계획과(☎02-450-7688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-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4. 기 타

-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■ 관계도면

[시장정비구역 결정도]



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결정도]

